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인제, 김춘곤,
남창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성흠제, 아이수루,
,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청와대소방대'가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되어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2.11.30.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와대소방대”를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u>청와대소방대</u>,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u>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u>,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